

대전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가단1377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현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2. 5. 19.

판 결 선 고 2022. 5. 26.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75,833,350원 및 그중 25,833,350원에 대하여는 2021. 8. 19.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8. 13.부터 각 2022. 4. 7.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이 2021. 6. 15.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2021.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와 접수 제634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원고의 청구취지는 주문(主文)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사 오현석

별지